

아동그룹홈 재정지원 개선 방안 연구

조수민¹, 김정화^{2*}

¹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²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A Study on Improving Financial Support of Grouphome for Children

Soo-Min Cho¹, Jeong-Hwa Kim^{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a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요약 본 연구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및 항목 분석을 통하여 그룹홈 운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아동그룹홈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 동종 시설 간 및 지역 간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며 소규모 보호시설 운영 시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소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운영비 지원은 아동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동종 시설 간 상대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그룹홈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안정적인 사업 기획 및 실행의 한계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 그룹홈의 예산 지원 방안을 논하였다.

주제어 : 보호대상아동,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예산, 처우개선, 재정지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grouphome management, by analyzing the sizes and items of children grouphome budget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rucial issue regarding labor costs within child grouphome budget, wa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ditions between workers in similar institutions and regions. Small-sized institutions operated under a system that inevitably required excessive workload for workers, leading to exhaustion. Second, the support of operation expenses was absolutely insufficient to meet the general and special needs of children, and the relative differences between facilities of the same type were also identified. Third, children grouphome had limitations in stable busines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due to the absence of business expense support.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discussed appropriate budget supporting measures regarding children grouphome, in order to ensure equal protection of grouphome children.

Key Words : Out-of-homecare children, Children grouphome, Social welfare budget, Improving of work condition, Financial suppor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 Council of Group home for Children & Youth.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지원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eong-Hwa Kim(swjhkim@knuw.ac.kr)

Received December 2, 2021

Revised February 17,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유기,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2002년 12,284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4천여명 이상의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1]. 원가정 밖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그룹홈 등에서 시설보호를 받거나 혹은 입양, 위탁 가정 등 가정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의 인식으로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며 2000년대 초반(2000-2003) 시설보호와 가정보호의 비율이 역전되는 듯 하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시설보호 비율이 증가하여 2020년에 신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중 66.2%의 아동들이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1]. 시설보호의 가장 비중이 큰 아동양육시설은 가정과 같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보호, 양육되기에는 대규모화되어 아동들이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능한 가정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상화 원리, 탈시설화 지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2].

이에 반해, 그룹홈은 지역사회 내 일반 가정과 같은 형태를 띠며 보육사의 지도하에 5-7명의 소수가 함께 거주하는 대안시설로 탈시설화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매년 신규 시설보호 중 그룹홈 보호 아동의 비율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3], 가정외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반영구적 가족기능을 담당하는 그룹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Table 1. number of children in grouphome care(n, %)

Year	2012	2014	2016	2018	2020
at-risk children	6,926	4,994	4,583	3,918	4,120
residential care	3,748 (54.1)	2,900 (58.1)	2,887 (63.0)	2,449 (62.5)	2,727 (66.2)
home care	3,178 (45.9)	2,094 (41.9)	1,696 (37.0)	1,469 (37.5)	1,393 (33.8)
grouphome care	775 (20.7)	506 (17.4)	592 (20.5)	648 (26.5)	712 (26.1)

아동그룹홈의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4,5]. 2005년부터 국고보조유지사업으로 지방이양되어 중앙 정부 차원의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 확대에 인하여 [6] 시설 및 보호 대상 아동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차,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7-9]. 특히,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 두 시설은 보호 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린바 있다[10].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 조직으로 종사자, 사람이 곧 도구로써 고품질의 사업을 수행을 통한 보호 대상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그들의 전문성 발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여,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직업적 안정성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조직 차원이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과 시설에 따른 차별적 지원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방해하며 소진과 잦은 이직을 야기하여 결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원칙들 중 하나는 평등성의 원칙으로 성별, 지역, 소득,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들은 동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충분한 양과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도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가 충분치 못하고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11]. 민간에서 소유,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자원을 생산해내기 어려운 조직 특성상 조직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조직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데 조직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아동그룹홈 재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도 부족하며 아동그룹홈에 초점을 두고 재정 규모 및 내용을

분석한 기존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 기준 및 항목을 분석하여 향후 아동복지 전달체계상에 보완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그룹홈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더불어 향후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룹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2.1 아동그룹홈의 기능과 서비스

아동그룹홈은 2004년부터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법적 근거를 갖고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원을 받는 아동그룹홈의 수는 2021년 기준 총 505개소이다[3]. 아동그룹홈의 기능과 서비스는 아동권리관점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유익이 될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 UN의 대안양육지침[12]은 탈시설화 맥락에서 시설보호에 대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질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시설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그룹홈이 외적 측면에서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일상생활을 보내며 아동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동 중심의 보호, 양육 및 자립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시설 유형별 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시설이나 가정위탁에 비해 그룹홈의 아동들이 평균적으로 더 나은 발달 성과 지표(예: 삶의 만족도, 행복, 걱정, 우울, 보호 만족도, 낙인감, 사회적지지, 학교 적응도 등)를 보인다[4,13,14]. 특히,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이 양육 시설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친가정 생활 사건을 더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인감은 덜 느끼고 사회적 지지와 주양육자와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학교 적응도가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4].

2.2 아동그룹홈의 재정지원 구조

아동그룹홈의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바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된다[10]. 아동그룹홈의 서비스는 민간보조공급 방식으로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신고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아동그룹홈에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여 이루어진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고정급 방식이다. 고정급 방식은 임금결정에 대한 특정한 원리나 체계가 없이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금액에 따라 임금이 고정되기 때문에 근속이나 숙련에 따른 임금 인상이 없어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이다[15].

재정 분권화에 따라 2005년부터 아동그룹홈에 대한 재정을 지방정부가 60%를 매칭하여 부담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지역간, 시설간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근로 환경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9]. 시설의 유형 및 지역에 따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과 운영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방해하며 소진과 잦은 이직을 야기하여[16-19] 결국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아동그룹홈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 또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 중장기적 계획하에 안정적으로 재정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아동학대 및 보호 시설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2021년 6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그룹홈과 아동학대예산 등 기금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2022년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20]은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가이드라인 기준의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건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그룹홈 재정지원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에 있어 문

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항목 중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서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2021년도 전국 17개 시도별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및 그룹홈아동 지원 예산 지원 실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2021)의 아동분야 사업지침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지원 항목과 단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그룹홈과 동일하게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가 이루어지는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 이용시설이기는 하나 유사한 운영 형태¹⁾를 띠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기준 및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아동그룹홈 재정지원 현황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 규모를 보면, 2018년 141.1억 원(466개소), 2019년 156.3억 원(482개소), 2020년 168.6억 원(491개소), 2021년 181.0억 원(505개소)이었다[3]. 2021년 아동그룹홈 운영 예산은 2020년 대비 약 7.3% 증액되었으나, 그룹홈의 신규 지원 개소수의 증가를 반영하면 1개소당 지원 예산은 약 4.3%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그룹홈 운영 예산은 전체 아동복지예산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타 기금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조 6,705억 원이었고[21], 이 중 보호대상아동 관련 예산은 1,782.2 억 원으로 약 6.7%였다[22]. 2021년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은 181.0억 원으로 전체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0.68%에 불과하며, 보호대상아동 예산 중에서도 10.1%의 수준이다[21].

4.2 인건비 지원의 문제점

4.2.1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보건복지부 아동 사업 안내에 제시된 아동그룹홈 1인당 연간 인건비 지원 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4,942천원, 2019년 26,189천원, 2020년 27,577천

원, 2021년 28,928천원이었다[15]. 2018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약 5%의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률을 보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인건비 기준안은 약 24.5% 인상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저임금액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8년 16,227천원, 2021년 21,544천원으로[23] 같은 기간 41.5% 인상된 것에 비하면 그룹홈 인건비 기준의 인상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에 비해, 아동그룹홈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지침[15]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의거하여 5-7명의 아동이 거주하는 그룹홈의 경우 시설장과 보육사 외 다른 종사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반해 대규모 시설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 영양사, 위생원, 조리원, 간호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사무국장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시설의 정원과는 별개로 아동이 적절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소규모 보호를 지향하는 그룹홈의 근무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 아동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5]. 시설장과 보육사는 아동의 일상생활 보살핌 뿐만 아니라 사무, 회계, 조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자, 후원 개발, 안전 관리, 환경 관리, 간호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업들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보육사의 업무는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보호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자립을 위한 다면적 요소(일상생활, 직업, 주거, 경제 생활 등)들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치 기준(10명 이상 시 1인 배치)으로 인하여 아동그룹홈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일부로 현재 그룹홈 중 4곳만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24] 기존의 종사자가 아동 자립을 위한 업무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소진,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낮은 직무 만족으로 이어져 결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¹⁾ 민간에서 소유, 운영하나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보조를 통해 운영하는 형태

Table 2. Local government support for grouphome

	pay step	pay for improving of work condition ²⁾	pay for holiday vacation ³⁾	overtime pay ⁴⁾	family allowance	pay for operation ⁵⁾	pay for program
SEOUL	o	o	o	o	o	-	-
BUSAN	-	o	-	o	-	o	-
DAEGU	-	o	o	-	-	o	-
INCHEON	o	-	o	-	o	o	-
ULSAN	-	o	△	o	-	o	o
GWANGJU	-	o	-	-	-	-	-
DAEGEON	-	o	o	-	o	o	-
GANGWON	o	o	o	-	-	-	o
GYUNGGI	-	o	△	△	-	△	-
GYEONGNAM	-	o	△	-	-	o	-
GYEONGBUK	-	o	-	-	-	o	-
JEONNAM	-	o	-	-	-	-	-
JEONBUK	-	-	-	o	-	-	-
JEJU	o	-	o	o	o	-	-
CHUNGNAM	o	o	-	△	-	-	-
CHUNGBUK	-	o	-	-	-	-	-

4.2.2 동종 시설 및 지역 간 차이

인건비 지원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체계의 비합리적인 구조로 동종 시설 간 그리고 지역 간 종사자들의 급여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의 100%를 지급 받는 것과는 다르게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경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확보 계획에 따르면[25]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9.9%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84.3% 확보하는데 불과하였으며 2022년에는 최종 100%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2022년 정부 제출안에서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그룹홈의 인건비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시설장과 보육사만을 구분하여 정액의 기본급을 지원하여 경력에 따른 처우가 불가능함이 확인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의 경우 원장, 선임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으로 구분되며 1호봉부터 최대 31호봉까지 기본급이 달리 책정되어 있다. 2020년 그룹홈 종사자 실태조사[24]에 따르면 현 시설에서의 근무경력 은 시설장과 보육사가 각각 평균 약 8년, 4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기본급에서 시설장의 경우 약 월 1,245천원, 보육사의 경우 월 14천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경력에 누적

되어 감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직급·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다고 명시하며[15] 이를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Table 2와 같이 2021년 현재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제주의 경우 별도의 기본급 지급에 있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위 5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정 부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경력에 따른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26].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기본급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에 의거하여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을 별도로 지급되는 것에 반해 그룹홈의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별도 지원은 전무하며[15] 지역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 유무 및 지급액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보장 받는 임금액의 차이는 훨씬 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간 외 근무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이 최대 40시간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반면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국가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14시간, 11시간에 달하여 주5일 기준 평균 70시간, 5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7]. 근로기준법의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도 지켜지고 있지

2) 최소 50천원(경기 일부 시)~556천원(서울)까지 매우 상이함
 3) △는 일부 시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임. 기본급의 120%(서울, 제주), 연 200천원(경남) ~ 연 2,000천원(대구)까지 매우 상이함
 4) 월 19천원~504천원까지 매우 상이하며 인정되는 근무시간도 각기 다름
 5) 상해보험료, 냉난방비, 안전장비 등 지역마다 용도 및 금액이 모두 상이함.

않을 뿐 아니라 실질 근로 시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가능하며,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준용」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15].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실태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매우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다[26].

4.3 운영비 지원의 문제

국고보조금에서 아동그룹홈에 지급되는 운영비 단가는 2021년 기준 월 336천원이었으며 2022년 예산안에 근거하면 21년 대비 4.4% 인상된 351천원이다[15]. 운영비 기준 단가를 소비자물가누적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물가누적상승률이란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단순히 합한 수치가 아니라 특정 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다음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최종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종합해서 물가 인상에 대한 체감을 확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28]. 이 같은 방식으로 기준연도(2007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물가누적상승률은 35.3%가 된다. 이와 비교해보면 그동안의 그룹홈 운영비 지원 단가는 약 24.5% 인상된 수준으로 체감적으로 소비자물가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룹홈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연료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 아동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는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할 때 낮은 금액으로 분석된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보장시설로 인정되어 1인당 생계급여가 나오며 월동대책비(연 40천원), 특별위로금(연 80천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운영을 위해 아동 개인별 부가급여(월 121천원), 시설당 기본 운영비(월 620천원)까지 더해진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기본운영비 단가가 월 677천원이며, 10인 미만 지역아동센터는 사업비 포함하여 월 3,190천원이다[15]. 아동분야 사업 지침 및 예산서에 운영비 지원단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아동복지시설 간 운영비 지원이 차이가 발생해야 하는 근거가 매우 모호하다.

그룹홈의 운영비 부족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전

월세 등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다. 그룹홈의 운영 주체는 전체의 73%가 개인으로 그 중 38.9%만이 주거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는 모두 전세, 월세, 무상대여의 형태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15].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매입임대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을 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매입임대의 4.2%만이 85m²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29] 시설 설치 규정 상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에 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는 자산취득이나 임대료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시설장 개인 사비, 후원금으로 충당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그룹홈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전월세 비용의 증가, 잦은 이주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이중, 삼중으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이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기준임대료의 60% 지급받을 수 있는데⁶⁾(2021년 기준 평균 135,300원) 지자체에 따라 해당 금액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어 운영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30]. 운영비의 경우에도 지자체에 따라 냉난방비, 상해 보험료, 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기도 하나 이 역시 지역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6].

4.4 사업비 지원의 문제

그룹홈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생활 사건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인지정서상의 발달 지연, 향후 자립과제 등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이외에도 개입이 필요한 과업[31, 32]들이 산적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들은 장애인 시설로 배치되지만 심하지 않은 경계선에 해당되는 아동은 그룹홈이나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되는데 이들의 숫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8]. 아동자립지원단(2017)의 실태조사에 참여한 221개 기관 중 180개 기관(81.4%)의 종사자들은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된다[33]. 또한,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로 보호조치되는 아동의 비율이 2012년 16.2%에서 2020년 42.9%로 증

⁶⁾「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아동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등 포함) 등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 시설 유형(자가, 임차), 정부지원(운영비-인건비)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가하고 있다[1]. 즉, 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나눔교육,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아동들의 심리사회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4].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시설의 프로그램 지출이 높을수록 아동들의 사회적지지, 학교적응, 생활만족도,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음주나 흡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지표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13,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명시할 뿐,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그룹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아동 개인별 직접지원(생계·급식비, 피복비 등) 항목으로 최소 시설생계급여 이상 지출한다는 조건 하에서 아동들이 받는 생계급여를 시설 회계로 편입하여 아동을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룹홈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의 생계급여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출가능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업비의 경우에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건비나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하고 있기도 하나 대부분 종사자 교육비 보조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26]. 이에 그룹홈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업, 개인 등의 경로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금이나 자원 연계를 통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 부족 상태에서 사업기획, 프로젝트 작성 등 후원금 개발 및 자원 연계 업무까지 가중되는 경우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맞물려 아동 돌봄의 질이 더욱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운영비와는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대 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심리치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사실상 그룹홈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의 72.7%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4]. 학대피해아동의 높은 비율로 인해 2020년 기준 학대피해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1,766명 중 714명이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

동그룹홈에 보호 조치되었다[1]는 점에서 '학대피해'라는 특수한 성격은 두 시설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룹홈 아동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은 그룹홈 아동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량이 적어 그룹홈 전체 거주 아동의 4.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33]. 아동권리보장원의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또한 10% 미만의 그룹홈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다[35]. 아동그룹홈에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룹홈의 근무상황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지적된다.

5. 개선방안

그룹홈 운영은 동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양육 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리고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종사자 처우를 포함한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그룹홈 종사자들의 업무 투입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체계의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용하여 경력에 따른 호봉제 적용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국고보조금에 매칭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인건비 지원 규모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안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한다. 인건비 지원 체계의 방향은 1단계로 사회복지 자력 및 경력을 반영한 기본급이 마련되어 기본급의 격차가 없어져야 하며, 2단계로는 근속, 직무 및 역할에 따른 종합적인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종사자 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 출산 및 질병 등에 따른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장기근속 휴가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이 쉼, 수면, 근로 시간 등 안정적인 근로 환경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사자의 다중 역할 수행은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요하는 영역에서 전문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직원에게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영역과 시간이 커서 부담감이 높고 직원 1명의 부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아동양육 시설 소규모화 정책[36] 및 EU 국가들에서 시설보호를 제한하려는 과정[37]을 살펴보면, 역량 있는 직원의 안정적인 존재, 근로조건의 배려, 연수 기회의 확보, 위험관리 지원, 슈퍼비전 체계 마련 등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된다.

지속적으로 대규모 시설 보호에서 가정과 같은 형태의 보호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호아동의 수로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적 제도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정부가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대규모일수록 지원이 더 많아지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8]. 따라서 아동 인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에서 벗어나 그룹홈 특성에 따라 자립, 후원개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사회복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생활복지사,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동종 시설간의 적정 운영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선 아동생활시설들이 기관의 미션, 지역사회 특성, 사회문화적 필요에 따라 시설 전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룹홈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 총량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서비스의 비용-효용성을 추정한 강현아 외[38] 연구에서 아동 1인당 보호비용이 2010년 기준 약 1,360만원이었으나 이후 연구가 없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적정 운영비 산출을 위해서는 아동그룹홈 및 시설의 체계적인 정보공개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가정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그룹홈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며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과는 다르게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에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해당 공급면적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제시하고 있는 시설 운영 지침에 맞게 그룹홈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며 종사자의 안전 관련 자격증 이수, 공기청정기 관리 등 매우 구체적인

으로 지침들을 제공하면서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에는 지극히 소홀하다. 따라서 지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건비 및 운영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비도 함께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룹홈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아동이 어느 지역이나 시설에 배치되어도 충분한 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그룹홈에 입소하는 사례들은 증가하는데 반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모금 개발을 통한 개입은 현재 그룹홈의 여건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심리검사 및 치료, 인지강화 프로그램,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사업비나 인건비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비 이외에도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가 포함되어 아동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그룹홈 자체적으로도 전문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이 뒤따를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룹홈 운영 지원부족의 문제는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아동복지예산이 극히 미미한데 따른 문제로 아동복지예산의 파이를 증대하기 위해 대안 마련 및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의 그룹홈 시설들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예산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원의 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요보호아동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a). *Report on the status of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Online]. <https://kosis.kr/index/index.do>
- [2] J. H. Jang & C. A. Heo. (2015). *A Study on*

- Switching Cost from Large Child Welfare Institution to Group-Home*. Seoul Foundation of Woman & Family Research Project Report, 1-101. Seoul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3]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An analysis of Out-of-Homecare children support project*. Seoul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4] I. J. Chung, S. J. Woo, H. A. Kang, J. S. Chun & J. A. Lee. (2012). The Factors Influencing Service Outcomes of Group Homes and Residential Care Centers: Focusing on Blinder-Oaxaca Decomposi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4), 107-127.
DOI : 10.5723/kjcs.2012.33.4.107
- [5] H. A. Kang, S. J. Woo, I. J. Chung, & J. S. Chun. (2012). The Budgets of Out - of - Home Care of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9), 7-38.
DOI : 10.20970/kasw.2017.69.3.004
- [6] E. G. Ji. (2010). *Social welfare finance research*. Seoul : JIPMUNDANG.
- [7] J. H. Ryu. (2018).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for a Community-based Child Protection System.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8(5), 7-24.
- [8] S. E. Im. (2020).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of the function of child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ed children and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Health-Welfare Issue & Focus*, 394, 1-12.
- [9] Y. M. Jung & H. A. Kang. (2012). The Factors Affecting Child Welfare Finance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Child Welfare Expenditures in Local Unit Autonomous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olicy*, 39(1), 283-308.
DOI : 10.15855/swp.2012.39.1.283
- [1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9, February). *Announcement of the decision of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Committee*.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11] M. S. Oh & H. J. Cho. (2019). A Study on the Alternative of Social Workers Wage System According to Institutional Environment: Focused on the Facilities that Have not Wage System.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9(4), 23-50.
DOI : 10.46330/jkps.2019.12.19.4.23
- [1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9).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document/united-nations-guidelines-alternative-care-children/>
- [13] S. J. Lee, H. A. Kang, C. R. Nho, S. J. Woo, J. S. Chun & I. J. Chung. (2017). Longitudinal Study on Care Satisfaction of Children in Out-of-Home - Comparison among Residential Care Centers, GroupHomes, and Foster Home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69(3), 97-119.
DOI : 10.20970/kasw.2017.69.3.004
- [14] S. J. Lee, J. H. Ryu, J. Y. Kim, M. H. Kim & J. M. Kim. (2019).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among Children in Out-of-Home Care System*. Sejong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2021 Children's social welfare program guide*. Sejong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16] Y. J. Moon.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Affective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Hygiene Factors and Job Performance : With a focus on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Busan and Gyeongnam. *Korean Community Welfare Studies*, 47, 113-148.
DOI : 10.15300/jcw.2013.47.4.113
- [17] L. S. Yeon. (2019). The Influence of Recogni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on the Aged Nursing Facility's Care Workers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ing on the Mediative Effects of Growth Needs. *Journal of Social Science*, 30(3), 289-310.
DOI : 10.16881/jss.2019.07.30.3.28
- [18] H. K. Jeong. (2003). Analysis of Factors that Organizational Environment of Childcare Teachers Affects Job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3, 273-305.
- [19] J. H. Hwang & Y. J. Kim. (2017). Multiple Correlates of Burnout in the Child Care Workers of Group Hom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2), 191-220.
DOI : 10.21509/KJYS.2017.02.24.2.191
- [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b). *Data on the 2022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 Sejong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1] Y. Choi. (2020). Analysis of the 2021 Health and Welfare Budget: Child and Youth Welfare. *Monthly welfare trend*, (265), 22-26.
- [22] Y. S. Lee. (2021).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Budget Structure of

- Child Protection Servic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1(6), 48-64.
- [23] Minimum Wage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021). Yearly trends in minimum wage.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24] The Yeongnam Ilbo. (2021. 07. 12). *Improve Work condition, such as the salary system for children's group home workers, the introduction of overtime allowances, and recruitment of manpower*. <https://www.yeongnam.com>
- [25] S. J. Kim National Assemblyman's room. (2020).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lated to the social worker labor cost guidelines and the amendment to the Act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Sejong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6] Korea Children's and Youth Group Home Council. (2021). *Internal Data on the Status of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for Children's Group Homes*. Seoul : Korea Children's and Youth Group Home Council.
- [27] I. J. Chung. (2021). *2020 A Study on the Status of Grouphome for child*. Seoul : Korea Children's and Youth Group Home Council.
- [28] H. G. Kim. (2019). Childcare Costs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Calculated Based on Minimum Wage Growth Rate and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8, 207-236.
DOI : 10.37918/kce.2019.09.118.207
- [29] K. S. Jang & I. S. Park. (2019).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housing size by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Seoul :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Investigation Office
- [30] SBS News. (2017. 10. 30). *Group Home to take care of hurt children, Worrying about running house prices*. www.sbsnews.co.kr
- [31] V. Sankaran, C. Church & M. Mitchell. (2018). A cure worse than the disease: the impact of removal o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Scholarship Repository*, 102(4), 1163-1194.
- [32] J. Thoburn. (1994). *Child plac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2nd.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 [33] Children Self-reliance Support group. (2017)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elf-Reliant Support Service for th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hildren*. Seoul: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34] S. J. Woo, H. A. Kang, C. R. Nho, J. S. Chun & I. J. Chung. (2018). The Effect of Program Expenditure on Developmental Outcome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Evidence from Administration-Level Data.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15(2), 183-196.
DOI : 10.31203/aepa.2018.15.2.009
- [35] H. J. Kang, S. M. Lee, J. H. Kim & B. R. Joo. (2020). *A Study on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 the Self-reliance Support Program for th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hildren*. Seoul: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36] J. W. Jung. (2022). Implications of Japan's policy on miniaturization of child care facilities. National Assembly debate for chillren deinstitutionalization.
- [37] J. Šiška & J. Beadle-Brown. (2020). *Report o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Based Services in 27 EU Member States*. European Expert Group on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
- [38] H. Kang, C. Nho, S. Woo, I. J. Chung & J. Chun. (2011). Estimation of cost function and cost-efficiency for residential child out-of-home car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7(4), 55-79.

조 수 민(Soo-Min Cho)

[정회원]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사)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석사)
- 201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임상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프로그램 평가, 사회 조사 및 통계
- E-Mail : soomin.cho@halla.ac.kr

김 정 화(Jeong-Hwa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사)
- 200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석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임상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의료사회복지
- E-Mail : swjhkim@knuw.ac.kr